

대통령령 제10934호(1982년 10월 21일)

## 食品衛生法 施行令 一部 改定

### 調査部

식품위생법시행령종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제 2 항 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직활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 5 조제 1 항 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를 “도지사”로 하고, 제 2 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 6 조제 2 항중 “2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를 “2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를 제외한다). 군·구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등종의 영업을 경영하는 자가 2종식품위생관리인에 갈음하여 1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는 경우에는 위생관리인을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1인의 식품위생관리인이 관리할 수 있는 업소수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로 한다.

제 7 조제 2 항중 “제 5 조제 2 호나 제 3 호에”를 “제 5 조제 1 항제 2 호 또는 제 3 호에”로 한다.

제 9 조제 1 항중 제 1 호 내지 제 3 호·제 7 호·제 10호·제 15호·제 17호·제 24호·제 30호 및 제 4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 1 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중음식점영업: 유홍종사자를 두지 아니하고 대중적인 탕반·면류·도시락등을 조리판매(이동식판매를 포함한다)하며, 간단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대중음식점과 짓죽·깨죽등 죽류와 인삼차·쌍화차등 차류(커피를 제외한다)만을 조리판매하는 인삼찻집으로서 제 1 호의 2·제 2 호 내지 제 5 호의 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음식점영업을 말한다.

1의 2. 간이주점: 객석의 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접객부를 둘 수 있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전문음식점영업: 접객부를 둘 수 있고, 고가의 전문음식 및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유통음식점영업: 유홍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며, 노래와 연주 및 춤등을 행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일반유홍음식점(노래·연주 및 춤등을 감상할 수 있는 극장식 식당·바아·비어홀·살롱·요정등)과, 무도유홍음식점(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캐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등) 및 외국인전용유홍음식점(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유홍음식점 또는 무도유홍음식점 형태의 영업)을 말한다.

7. 아이스크림 제조업: 아이스크림·아이스밀크·샤벳·비유지방아이스크림·빙과류나 아이스크림분말·샤벳분말·비유지방아이스크림분말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0. 절임식품류제조업: 단무지·젓갈류·콩조림 및 기타 식품을 절임하거나 졸임하는 영업을 말한다.

15. 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 통 또는 병등 밀폐된 용기에 원형·절단상태의 고형물·젤 또는 죽상태의 것을 넣어 병원균 및 부패·세균을 가열·살균 처리하여 상당한 기간 내용식품 고유의 품질을 보존하게 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7. 청량음료 또는 과채류등 음료제조업: 청량음료 제조업은 유기산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혼합음료(생유·우유 또는 유제품에 음료성분과 첨가물을 가하여 우유로 환

## 식품위생법 시행령

원될 수 없는 청량감을 주는 음료성 식품으로서 무지 고형분 3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하며, 과채류등 음료제조업은 과채류 또는 푸류를 주성분으로 하여 직접 음용할 수 있는 음료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4. 인스탄트식품제조업** : 직접 또는 간단한 조리방법(가열, 물에의 용해등)으로 식용이 가능하며, 특별한 온도조정이 없어도 보존성이 높고 휴대·운반이 용이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으로서 다른 영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30. 식품가공업** : 식품원료를 추출·분쇄·혼합등의 방법으로 단순히 가공하여 식용할 수 있는 식품을 제조하거나 다른 식품의 제조·조리등에 사용하는 중간제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을 하는 자가 제분을 하거나 가공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만을 사용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47. 젓가락등 위생처리업** : 소독젖가락·이쑤시개를 위생적으로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 9조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 1항제 1호의 영업은 이를 대중음식점 또는 인삼찻집으로 구분하여 신고하게 하여야 하며, 동항제 3호의 영업은 이를 일반유홍음식점·무도유홍음식점 또는 외국인전용유홍음식점으로 각각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 9조의 2 제 3항** “제 9조제 1항제 2호 내지 제 6호”를 “제 9조제 1항제 1호의 2·제 2호 내지 제 6호”로 한다.

**제11조제 1항제 2호 및 제 3호**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 4항** “제 9조제 1항제 3호·제 6호 내지 제 27호”를 제 9조제 1항제 3호·제 7호 내지 제 27호”로 한다.

**제12조제 1항제 6호** “국립보건연구원장”을 “국립보건원장”으로 하고, 동조 제 3항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 9조제 1항제 7호·제 9호·제 11호 내지 제 13호”를 “도지사가 제 9조제

1 항제 7호·제 9호·제 11호·제 12호·제 14호”로 한다.

**제14조** 본문 단서중 “공무원교육원의 급식소는 제외한다”를 “공무원교육원의 급식소와 그 종사자에 대한 급식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5조제 1항**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로 한다”를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로 하되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집단급식소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 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 1항** “1년”을 “2년”으로 하고, 제 2항 “통리하며”를 “통할하며”로 한다.

**제23조**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으로 한다.

**제24조**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29조제 1항 및 제 2항** “부산시”를 각각 “직할시”로 한다.

**제34조**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간이주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 10,268호 식품위생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주점영업자로서 대중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자 중 1982년 12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간이주점영업을 할 것을 관할 허가관청에 신고한 자는 제 9조제 1항제 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간이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하고 인삼찻집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할 신고관청이 확인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인삼찻집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무도유홍음식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홍음식점영업중 캐비

례·나이트클럽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무도유홍음식점의, 요정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유홍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요정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무도유홍음식점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관할 허가관청으로부터 확인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무도유홍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업종의 내용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 9조제 1항제 7호·제 15호·제 17호·제 24호 및 제 30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자로서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업종의 내용이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내용과 일치되지 아니하게 된 영업자는 그 업종의 내용에 맞는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1984년 12월 31일까지 해당업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인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제 1조(제품검사) ①(생략) ②제 1항의 첨가물에 대한 제품검사는 그 첨가물의 제조업 또는 소분업의 허가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가 행한다.	제 1조(제품검사) ①(현행과 같음) ②.....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제 5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법 제1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5. (생략)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중 소정의 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임정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 5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 .....도지사..... ..... ..... ..... ..... ..... 1~5. (현행과 같음)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 ..... ..... ..... ..... ..... ..... ..... .....
제 6조(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업종) 법 제1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9조제 1항제 7호 내지 제33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주체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았거나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영업자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을 두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1. (생략) 2.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업자는 제 7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2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단서 신설)	제 6조(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업종)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다만, 동일한 시(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를 제외한다)·군·구단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동종의 영업을 경영하는자가 2종식품위생관리인

현 행	개 정
제 7 조(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	인에 갈음하여 1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는 경우에는 위생관리인을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1인의 식품위생관리인이 관리할 수 있는 업소수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①(생 략)	제 7 조(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
② 1종식품위생관리인은 제 5조제 2호나 제 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을 얻었거나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다만, 화학적 합성 phẩm인 첨가물의 제조업에 있어서의 식품위생관리인은 대학에서 약학·식품기공학 또는 식품학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라야 한다.	①(현행과 같음)
③(생 략)	②.....제 5조제 1항제 2호 또는 제 3호에..... ..... ..... ..... ..... .....
제 9 조(영업의 종류)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주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았거나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 제외한다.	③(현행과 같음)
1. 대중음식점영업 : 대중적인 탕반·면류·도시락 등을 조리판매(이동식판매를 포함한다)하는 음식점 영업으로서 제 2호 및 제 3호의 음식점 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음식점 영업을 말한다.	제 9 조(영업의 종류) ① ..... ..... .....
(신 설)	1. 대중음식점영업 : 유흥종사자를 두지 아니하고 대중적인 탕반·면류·도시락을 조리판매(이동식판매를 포함한다)하며, 간단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대중음식점과 잣죽·깨죽등 주류와 인삼차·쌍화차등 차류(커피를 제외한다)만을 조리 판매하는 인삼찻집으로서 제 1호의 2·제 2호의 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음식점영업을 말한다.
2. 전문음식점영업 : 고가의 전문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접객부를 두고 주류 및 고가의 전문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의 2. 간이주점 : 객석의 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접객부를 둘 수 있고,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유홍음식점영업 : 유홍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며, 손님의 유홍을 위하여 가무음곡 또는 무도를 행하는 캬바레(유홍종사자를 두고 주로 주류를 판매하며,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으며 가무음곡과 무도를 행하는 영업), 나이트클럽(유홍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며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으며 가무음곡과 무도를 행하는 영업), 요정(유홍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며, 가무음곡을 행하는 영업)과 외국인전용 유홍음식점(외국인 및 외국인 선원등의 유홍과 휴식을 목적으로 유홍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며, 가무음곡을 하거나 무도장을 두고 무도를 행하는 영업) 등의 영업을 말한다.	2. 전문음식점영업 : 접객부를 둘 수 있고, 고가의 전문음식 및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유홍음식점영업 : 유홍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며, 노래와 연주 및 춤등을 행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일반유홍음식점(노래와 연주 및 춤등을 감상할 수 있는 극장식 식당 바아·비어홀·살롱·요정 등)과, 무도유홍음식점(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카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등) 및 외국인 전용유홍음식점(외국인 및 외국인 선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유홍음식점 또는 무도유홍음식점 형태의 영업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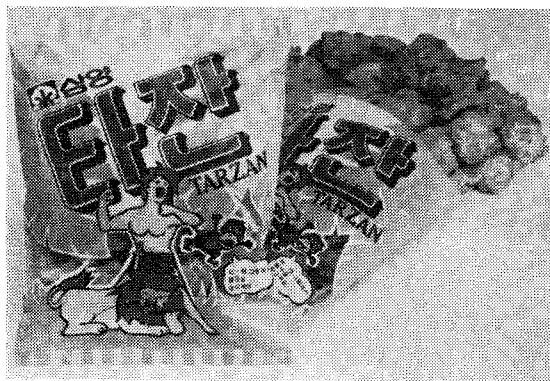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4. ~6. (생략)	4. ~6. (현행과 같음)
7. 아이스크림제조업 : 아이스크림 · 아이스케이크 · 아이스캔디등의 식품이나 액체식품 또는 이에 다른 식품을 혼합한 것을 동결시킨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7. 아이스크림 제조업 : 아이스크림 · 아이스밀크 · 샤벳트 · 비유지방아이스크림 · 빙파류나 아이스크림분말 · 샤벳트분말 · 비유지방아이스크림분말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8. ~9. (생략)	8. ~9. (현행과 같음)
10. 절임식품제조업 : 단무지 · 젓갈류 · 통조림 및 기타 식품을 절임하거나 졸임하는 영업을 말한다.	10. 절임식품류제조업 : .....콩조림 및 .....
11. ~14. (생략)	11. ~14. (현행과 같음)
15. 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 : 통 또는 병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 병원균 및 부패세균을 가열 살균 처리하여 상당한 기간 내용식품 고유의 품질을 보존하게 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5. 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 : 통 또는 병등 밀폐된 용기에 원형 · 절단상태의 고형물 · 켐 또는 죽상태의 것을 넣어 병원균 및 부폐세균을 가열 · 살균처리하여 상당한 기간 내용식품 고유의 품질을 보존하게 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17. 청량음료제조업 : 청량음료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하며, 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17. 청량음료 또는 과채류등 음료제조업 : 청량음료 제조업은 유기산음료 · 탄산음료 ·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 음료를 포함한다). 혼합음료(생유 · 우유 또는 유제품에 음료성분과 첨가물을 가하여 우유로 환원될 수 없는 청량감을 주는 음료성 식품으로서 무지유고형분 3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하며, 과채류등 음료제조업은 과채류 또는 과류를 주성분으로 하여 직접 음용할 수 있는 음료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8. ~23. (생략)	18. ~23. (현행과 같음)
24. 인스탄트식품제조업 : 조리과정에 있어서 번잡과 긴시간을 요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보존성이 높고 수송이 용이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으로서 다른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24. 인스탄트식품제조업 : 직접 또는 간단한 조리방법(가열, 물에의 용해등)으로 식용이 가능하며, 특별한 운도조정이 없어도 보존성이 높고 휴대운반이 용이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으로서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25. ~29. (생략)	25. ~29. (현행과 같음)
30. 식품가공업 :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을 하는 자가 가공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만을 사용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30. 식품가공업 : 식품원료를 추출 · 분쇄 · 혼합등의 방법으로 단순히 가공하여 식용할 수 있는 식품을 제조하거나 다른 식품의 제조 · 조리등에 사용하는 중간제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을 하는 자가 제분을 하거나 가공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만을 사용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31. ~46. (생략)	31. ~46. (현행과 같음)
47. 젓가락 위생처리업 : 식품접객업소의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한 젓가락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포장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47. 젓가락등 위생처리업 : 소독젓가락 · 이쑤시개를 위생적으로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48. (생략)	48. (현행과 같음)
②제 1 항제 3 호의 유통음식점영업의 허가에 있어	②제 1 항제 1 호의 영업은 이를 대중음식점 또는 인

현 행	개	정
서는 이를 카바레·나이트클럽·요정등으로 구분하여 허가할 수 있다.	삼창집으로 구분하여 신고하게 하여야 하며, 통합제3호의 영업은 이를 일반유동음식점·무도유동음식점 또는 외국인전용유동음식점으로 각각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 9 조의 2(영업자의 준수사항등) ①~②(생략)	제 9 조의 2(영업자의 준수사항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제 9조제 1항제 2호내지 제 6호의 영업의 허가관청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 9조제 1항제 1호의 2·제 2호 내지 제 6호	
제11조(영업의 허가 및 신고관청) ①법 제23조제 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및 신고(영업장소 또는 시설의 변경허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제11조(영업의 허가 및 신고관청) ①	
1. (생략)	.....	
2. 제 1호에 기재한 영업을 제외한 제 9조제 1항 각호의 영업의 허가 및 신고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한다. 다만,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영업의 허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1. (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 9조제 1항 각호의 영업중 제15호(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영업에 한한다)·제31호·제32호·제40호·제41호와 제42호(수산업에 관한 영업에 한한다)의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제 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농수산부와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 도지사.....	
②(생략)	3. 도지사 .....	
제11조의 4(조전부영업허가의 대상업종) 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조전부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업은 제 9조제 1항제 3호·제 6호 내지 제 27호·제 29호 내지 제33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12조(영업허가의 신청 및 신고) ①법 제23조제 1항·제 3 항 및 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 9조제 1항 각호의 영업(제11조의 3 각호의 영업을 제외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4(조전부영업허가의 대상업종)..... .....제 9조제 1항제 3호·제 7호 내지 제 27호.....	
1.~5. (생략)	.....	
6. 제조방법설명서. 다만, 식품첨가물공전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첨가물에 대하여는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인정하는 당해 품목의 품질관리상 필요한 시험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할 것.	제12조(영업허가의 신청 및 신고) ① .....	
②(생략)	.....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또는 도지사가 제 9조	1.~5. (현행과 같음) 6. ..... 건원장.....	국립보
	②(현행과 같음)	
	③도지사가 제 9조제 1항제 7호·제 9호·제 11호	

현 행	개 정
<p>제 1 항 · 제 7 호 · 제 9 호 · 제 11호 내지 제 13호 · 제 19호 · 제 20호 · 제 22호(인스탄트 면류에 한한다) · 제 23호 · 제 27호의 영업허가를 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12호 · 제 14호 · ..... ..... ..... ..... ..... ..... .....</p>
(④~⑤)(생략)	④~⑤(현행과 같음)
<p>제 14조(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 접단급식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식점은 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기숙사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공무원교육원의 급식소는 제외한다.</p>	<p>제 14조(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 ..... ..... ..... ..... ..... ..... .....</p> <p>..... ..... ..... ..... ..... ..... .....</p>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p>제 15조(영양사를 두어야 할 접단급식소) ①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할 접단급식소는 계속적으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접단급식소로 한다. 다만,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단급식소에 둔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도 받은자인 때에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수 있다.</p>	<p>제 15조(영양사를 두어야 할 접단급식소) ..... ..... ..... ..... ..... ..... .....</p> <p>..... ..... ..... ..... ..... ..... .....</p>
<p>②접단급식소의 경영자는 접단급식소의 소재지, 급식인원등을 감안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20인의 접단급식소에 1인의 영양사를 두고 그로 하여금 이를 공동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삭제)</p>
<p>제 17조(위원회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여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간으로 한다.</p>	<p>제 17조(위원회의 임기와 직무) ①.....2년 ..... ..... ..... .....</p>
<p>②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통할하며, .....</p>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p>제 23조(식중독원인의 조사) 법 제 38조제 2항(법 제 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및 그 지소장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읍·면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과 같다.</p>	<p>제 23조(식중독원인의 조사) ..... ..... ..... ..... ..... ..... .....</p> <p>..... ..... ..... ..... ..... ..... .....</p>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p>제 24조(식중독에 관한 보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제 38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24조(식중독에 관한 보고) 도지사 ..... ..... ..... ..... ..... ..... .....</p>
제 29조(지구등) ①법 제 40조의 2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지구는 서울특별	<p>제 29조(지구등) ①..... .....서울특별</p>

현 행	계 정
시·부산시 또는 도로 한다. 다만, 영업자의 수가 지구별로 조합을 설립하기에 부적당한 때에는 전국을 지구로 할 수 있다.	시·직할시 또는 도..... ..... .....
②조합은 필요에 따라 구(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에 한한다). 시·군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
제34조(권한의 위임) 법 제40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중 제9조제1항제7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4호·제19호·제20호·제22호(인스탄트 면류에 한한다). 제23호·제27호·제28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영업이외의 영업에 대한 제11조제1항제2호의 권한 및 법 제16조·법 제23조내지 제26조의 3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 ..... 도지사..... ..... ..... ..... ..... ..... ..... .....

## 營養스낵 三養「타잔」開發 市販



三養食品工業(社長；全應德)은 营養스낵 「타잔」을 開發 市販하고 있다.

最新 先進施設을 導入, 高級少麥粉·물엿·벌꿀 등 精選된 原料를 사용, 組織이 부드럽고 바삭바삭하여 어린이 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간식용·野遊會·파티用으로도 人氣가 있다. 50g 1食에 販賣가격은 100원.